

(비공식 번역본)

투자위원회 고시

제 Sor.3/2561 호

일반 노동자 거주지 개발 지원에 대한 내용

태국인과 외국인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로 거주지를 개발함으로써 일의 효율성을 높임.

1977년 투자 촉진법에 노동항목 개선 16조를 따르고 투자위원회는 투자 촉진법 관련 제7항 제 2/2552호를 2014년 12월 3일부터 적용, 그리고 조건과 권리, 혜택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시함.

항목 종류	조건	권리와 혜택
7.30 일반 노동자 거주지 환경 개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51%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태국인 필요</li><li>거주지의 숫자와 크기 명시 필요, 그리고 각각의 건물은 80유닛(크기) 이상 또는 토지가 4,000평방미터 이상 이어야 함</li><li>사용 하는 토지는 유닛 당 최소 20 평방 미터 여야하고 거주지의 기준은 국제노동협회의 기준에 맞아야 함.</li><li>거주지 프로젝트에 관련한 담당자가 있어야 하며 정보를 기록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야 함.</li><li>외국에서 온 노동자의 경우 합법적으로 온 사람 이어야 하며 요청자의 경우 24시간 이내로 온라인으로 들어가 거주지 등록절차를 마쳐야 함.</li><li>주차장, CCTV, 24시간 경비원, 청소원, 응급실, 주방 그리고 그 외에 각종 시설이 필요하고 이 기준은 국제노동협회를 따르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.</li></ol>	A4

항목 종류	조건	권리와 혜택
	<p>7. 임대만 가능하며 임대료에서 오는 소득은 법인세를 면제받음.</p> <p>8. 기계를 수입해오는 시간과 작동시간은 연장 하지 않음.</p> <p>9. 국경지대에 속하는 10개 지방 또는 최저임금을 받는 20개 지방의 경우 법인 소득세를 6년동안 면제받음.</p> <p>10. 2019년 12월 30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해야 함.</p>	

고시한 날부터 시행

고시일 2018년 8월 3일

(General Prayut Chan-o cha)

투자위원회 의장